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28

발의연월일: 2022. 12. 20.

발 의 자:金炳旭・강대식・김학용

노용호 • 박성민 • 성일종

이명수 · 임이자 · 정운천

홍석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 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상가건물 및 중소기업의 건축물 등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내용은 없음.

한편,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재난으로 인해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이 파손되어도 별도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을 지 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 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상가건물"로 하고, 같은 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 및 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용 <u>건축물</u> 의 복구비 지	2 <u>건축물 및 「전통시</u>
원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u> 상가건물</u>

3. ~ 7. (생 략) <u><신 설></u>

<신 설>

<u>8. · 9.</u> (생 략)

④ ~ ⑦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 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수도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지원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